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30

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 박정현·허 영·이기헌

김한규 · 김우영 · 박홍배

주철현 · 김남근 · 박희승

서미화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재 국회에서는 개별법령에 따라 국정감사와 국정조사, 공직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입법청문회 등을 실시하고 있음.

이에 국회는 책무를 다하기 위해 행정부에 업무·사무를 감독·견 제하고자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나, 대부분의 기관에서 개인정보 를 이유로 일부 서류들을 제출하고 있지 않아 각 부처에서 담당하는 소관 사무가 적법하고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 도가 없는 상황임.

이에 개인정보의 제공 제한 제외 규정에 국회의 청문회 등에서 필 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(안 제1 8조제2항제10호 신설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"제9호까지에"를 "제10호까지에"로 하고, 같은 항 제10호를 제11호로 하며,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0.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정감사, 국정조사, 청문회 또는 인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| 제18조(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| | | |
| ·제공 제한) ① (생 략) | ·제공 제한) ①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 | ② | | | |
| 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| | | | |
|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 | | | | |
| 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| | | | |
|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| | | | |
|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| | | | |
|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| | | | |
|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 | | | | |
| 다. 다만, 제5호부터 <u>제9호까지</u> | 제10호까지에 | | | |
| <u>에</u>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 | | | | |
| 우로 한정한다. | | | | |
| 1. ~ 9. (생 략) | 1. ~ 9. (현행과 같음) | | | |
| <u><신 설></u> | 10. 「국회법」에 따른 국정감 | | | |
| | 사, 국정조사, 청문회 또는 인 | | | |
| | 사청문회의 수행을 위하여 필 | | | |
| | <u>요한 경우</u> | | | |
| <u>10.</u> (생 략) | <u>11.</u> (현행 제10호와 같음) | | | |
| ③ ~ ⑤ (생 략) | ③ ~ ⑤ (현행과 같음) | | | |